#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2023. 04. 28.



가야대학교 입학처

## 【목 차】

- 가. 2025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
  - 1. 2025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
  - 2. 모집시기별 주요사항 요약
  - 3.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
  - 4. 모집인원
  - 5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  - 6. 지원자격
  - 7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(정시)
  - 8.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(수시)
  - 9.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

#### 나. 수시모집

- 1. 학생부교과(일반학생)
- 2. 학생부교과(가야인재)
- 3. 학생부교과(지역인재)
- 4. 학생부교과(지역인재\_기초생활수급자)
- 5. 학생부교과(농어촌전형) 【정원외】
- 6. 학생부교과(특성화고 졸업자) 【정원외】
- 7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【정원외】

#### 다. 정시모집

1. 수능위주(일반학생)

## 가. 2025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

## 1. 2025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

구 분		2024학년도	<u>.</u>			2025학년도	
입학 정원	460명				460명		
모집 인원	493명 (정원내 : 467명, 정원외 26명)				493명 (정원내 467명, 정원외 26명)		
	구분	수시	정시		구분	수시	정시
모집	정원내	436	31		정원내	437	30
시기별 인원	정원외	26	_		정원외	26	_
	합계 462 31				합계	463	30
전형 변경	_					_	

## 2. 모집시기별 주요사항 요약

구 분	내 용	비고
모집인원	493명 (정원내 467명, 정원외 26명) 수시 : 463명, 정시 30명	
수시 전형명 및 전형요소	[정원내] - 일 반 학 생: 258명 - 가 야 인 재: 151명 - 지 역 인 재: 26명 - 기초생활수급자(지역인재): 2명 *전 학 과: 학생부 100%	
정시 전형명 및 전형요소	- 일반학생 : 30명 *전 학 과 : 수능 70%, 학생부 30%	
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전형(수시)	- 해당사항없음	
대학수학능력 시험탐구영역 반영과목수	- 국어,수학,영어 중 택 2+탐구영역 중 상위1개과목 반영 +한국사반영	
대학수학능력시험 가산점(정시)	- 해당사항없음	
기회균형선발	[정원내]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지역인재) [정원외] -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- 농어촌학생 - 특성화고졸업자	

## 3.전형유형 및 모집인원

모집 시기	전형유형		모집단위	비고
		일반학생	258	
	MOLII	가야인재	151	
	정원내	지역인재	26	
		기초생활수급자 (지역인재)	2	
수시		정원내 소계	437	
	정원외	농어촌학생	9	
		특성화고졸업자	6	
		기초생활수급자	10	
		재외국민과 외국인	1	
		정원외 소계	26	
	수시모집 소계		463	
정시	정원내 일반학생		30	
	정시모	집 소계	30	
	합	계	493	

※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



## 4.모집인원

				수시									정시
승	٦L	모집 정원			정원내					정원외			정원 내
학과		정원	뎰반학쟁	가야인재	지역인재	기초 (지역 인재)	계	농어 촌전 형	특성 화고 출신 자	기초 생활 수급 자	재외 국민	계	일반 학생
사회복지	상담학과	26	25				25				1	1	1
유아고	교육과	18	17				17						1
특수교		27	26				26						1
작업치	료학과	26	25				25						1
방사신		45	44				44						1
간호	학과	165	15	110	18	2	145	9	6	7		22	20
물리치		53	2	41	8		51			3		3	2
스포츠재홀	할복지학부	55	54				54						1
커리어플	사회복지 상담전공	21	20				20						1
러스학부	부동산금 융재테크 전공	31	30				30						1
합	계	467	258	151	26	2	437	9	6	10	1	26	30

## 5.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				전형요소 및 반영비율(%)						
모집 시기		전형유형	학성	냉부					비고	
71121			교과	비교과	수능	실기	서류	면접		
		일반학생	100							
	저이네	지역인재	100							
<b></b>	정원내	지역인재	100							
수시		기초생활수급자(지역인재)	100							
		농어촌학생	100							
	ᅺ이이	특성화고 <u>졸</u> 업자	100							
	정원외	기초생활수급자	100							
	재외국민과 외국인		_				100			
정시	정원내	일반학생	30		70					



## 6.지원자격

모집 시기	전형	l 유형	지원자격
		일반학생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
		가야인재	1.일반고(인문계고) 졸업(예정)자 2.특목고 졸업(예정)자(예체능특목고제외) 3.일반고교(인문계고교) 교육과정 이수(예정)자 (ex. 종합고)
	정원내	지역인재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경남, 부산,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		기초생활 <del>수급</del> 자 (지역인재)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경남, 부산,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.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나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수 시 (학생부 교과위주)	정원외	농어촌학생	[유형 I ] 지원자 본인이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본인 및 부모가 지원자의 중·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(부모거주)(사망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) [유형 II ] 지원자 본인만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학교에서 초·중·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(부모 비거주) ※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 처리함.  ※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①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③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함(외국어고, 국제고,화학고, 예술고,체육고 등)
		특성화고교 졸업자	특성화고교,종합고교의 특성화계열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(간호과)졸업(예정)자 ※ 마이스터고, 예술고, 체육고, 특수목적고, 학력인정학교, 대안학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
		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	-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 나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	재외국민과 외국인	-추후안내 -



모집 시기	전형	유형	지원자격
	정원내	일반학생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
정 시 (수능위주)	정원외	농어촌학생	[유형 I ] 지원자 본인이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본인 및 부모가 지원자의 중·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(부모거주)(사망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) [유형 II ] 지원자 본인만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학교에서 초·중·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(부모 비거주) ※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 결격 처리함.  ※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①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③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함(외국어고, 국제고,화학고, 예술고,체육고 등)
		특성화고교 졸업자	특성화고교,종합고교의 특성화계열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(간호과)졸업(예정)자 ※ 마이스터고, 예술고, 체육고, 특수목적고, 학력인정학교, 대안학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
		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	-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※수시모집 미달일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



#### 7.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(정시)

모집		스느서저	스느서저	수느서저	수능선저	수능성적	수능성적 반영		수능영역별 반영비율(100%)					
I 소립 I 시기	계열		명역수	역역수		od od	탐구	한국사						
				국어	가/나	영어	사/과/직							
정시	전계열	백분위/등급	4	40	40	40	10	10						

<sup>※</sup> 국어,수학, 영어 중 택2+탐구영역중 상위 1개과목반영+한국사반영

#### 8.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(수시)

※ 전체전형 및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함

#### 9.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

1) 반영영역 및 비율 : 교과 100%

2) 학년별 반영비율 및 학기

가)수시 : 전학년 100%

졸업(예정): 3학년 1학기졸업생: 3학년 2학기

정시 : 전학년 100%

- 졸업(예정자) : 3학년 2학기

3) 교과목 반영방법 : 우수교과 <mark>8과목 석차등급</mark> 반영

모집단위	반영과목
전 모집단위	<ul> <li>국어, 영어, 수학 중 상위 6개과목</li> <li>사회(역사/도덕포함),한국사, 과학, 체육 중 상위 2개과목 (단, 체육: 스포츠재활복지학부만 해당)</li> <li>진로 선택과목은 최대 2과목 반영</li> <li>진로 선택과목 (A: 1등급, B: 3등급, C: 5등급의 석차 등급에 준하여 반영)</li> <li>체육 과목 성취도 (A: 2등급, B: 5등급, C: 7등급의 석차 등급에 준하여 반영)</li> </ul>



<sup>※</sup> 국어,수학, 탐구영역은 백분위반영, 영어, 한국사는 등급반영

## 나. 수시모집

### 1.학생부교과(일반학생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			
	모집인원	258명			
	모집단위	전 모집단위			
학생부교과 (일반학생)	지원자격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			
(로인약영)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			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			

## 2.학생부교과(가야인재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			
	모집인원	151명			
	모집단위	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			
학생부교과 (가야인재)	지원자격	1.일반고(인문계)고 졸업(예정)자 2.특목고 졸업(예정)자(예체능특목고제외) 3.일반고교(인문계고교) 교육과정 이수(예정)자 (ex. 종합고			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			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			



### 3.학생부교과(지역인재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				
	모집인원	26명				
	모집단위	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				
학생부교과 (지역인재)	지원자격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경남, 부산,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				
[(지역인제)]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				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				

### 4.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\_지역인재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기초생활 수급자_ 지역인재)	모집인원	2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
	지원자격	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경남, 부산, 울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.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나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안함 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



## 5.학생부교과(농어촌전형)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	모집인원	9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
학생부교과 (농어촌학생)	지원자격	[유형I] 지원자 본인이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본인 및 부모가 지원자의 중·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(부모거주)(사망,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) [유형II] 지원자 본인만 농·어촌소재지(읍·면)학교에서 초·중·고전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(부모 비거주) ※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취지에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미충족자는결격 처리함. ※ 농어촌지역 적용기준 ①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

### 6.학생부교과(특성화고 졸업자) 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학생부교과 (특성화고 <u>졸</u> 업자)	모집인원	6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
	지원자격	특성화고교,종합고교의 특성화계열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( <mark>간호학과</mark> ) 졸업(예정)자 ※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학력인정학교, 대인학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



## 7.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【정원외】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	모집인원	10명
	모집단위	간호학과,물리치료학과
학생부교과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	지원자격	-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 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- 적용 안함
	전형방법	*학생부 100%

## 다. 정시모집

### 1.수능위주(일반학생)

전형유형	구 분	세 부 내 용
수능위주 (일반학생)	모집인원	30명
	모집단위	전학과
	지원자격	1.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.검정고시출신자 3.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자
	수능최저 학력기준	적용 안함
	전형방법	*전학과 : 수능 70%, 학생부 30%

